

의안번호	2207166
의 퇴 인	임이자 의원
회 답 일	2025.4.11.
추 계 번호	24B6441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노동약자의 지원과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동약자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정·보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8,300만원, 2030년 1억 8,3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9억 1,400만원(연평균 1억 8,3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지원계획의 수립 등 (안 제6조)	42	42	42	42	42	208	42
실태조사(안 제7조)	67	67	67	67	67	334	67
노동약자지원위원회 (안 제8조)	8	8	8	8	8	42	8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등(안 제12조)	66	66	66	66	66	330	66
추가재정소요	183	183	183	183	183	914	183

주: 1.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기본원칙)	국가는 이 법에 따라 노동약자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함 1. 노동약자가 가지는 「헌법」 상 근로의 권리 등이 구현되도록 할 것 2. 노동약자가 국가로부터 공정하게 지원·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 3. 다른 법률과 연계하여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증진되도록 할 것	의무규정
2	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직무능력 개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노동약자의 지원과 보호를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제2항) 1. 노동약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동약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노동약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약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노동약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4	안 제7조(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노동약자의 현황, 일하는 환경 및 처우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음(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분야로서 노동약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를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8조(노동약자지원위원회)	노동약자의 지정 및 노동약자의 지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노동약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노동약자의 지정 및 지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약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6	안 제9조(취업촉진 및 고용안정)	국가는 노동약자의 취업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제1항) 1. 노동약자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전직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노동약자의 직무능력 개발에 필요한 훈련과정 개설 및 훈련비 지원 3. 노동약자의 창업 촉진, 사업화, 마케팅 활성화 등 지원 4. 노동약자에 대한 고용창출·유지·조정 등 고용안정 지원 5. 그 밖에 노동약자의 취업촉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	재량규정
7	안 제10조(복지증진)	국가는 노동약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1. 노동약자의 휴게시설·쉼터 설치 및 복지 물품 지원 2. 노동약자의 생계비 자금 대출 등 생활 안정 지원 3. 노동약자의 질병·부상에 따른 생활비 및 상병수당 등 지원 4. 노동약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산 및 노후준비 지원 5. 노동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주, 근로자 간 상생협력 지원 6. 그 밖에 노동약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	재량규정
8	안 제11조(권익보호)	국가는 노동약자의 일하는 여건 개선 및 이해 대변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1. 노동약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 및 교육 지원 2. 노동약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산업재해 예방 지원 3. 영세사업장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지원 4. 노동약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장려금·컨설팅·인프라 등 지원 5.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영세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12조(표준 계약서의 제정· 보급 등)	국가는 노무제공 및 보수 지급과 관련된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은 제외한다)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제1항)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노동약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제2항)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노무제공계약 당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활용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상담·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노동약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함(제5항)	의무규정
10	안 제13조(보수 미지급 예방)	국가는 노동약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음(제1항) 1. 제3자에게 노무제공에 따른 보수를 예치하는 시스템 도입·운영 2. 보수 지급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 가입 지원 3.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지원 4. 그 밖에 노동약자의 보수 미지급 예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	재량규정
		국가는 노동약자에 대한 보수 미지급 예방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 미지급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1	안 제14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노동약자의 노무제공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약자의 노무제공 관련 분쟁의 조정을 지원하는 공익위원을 둔. 이 경우 위원회 공익위원의 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제2항에 따른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문제 또는 분쟁조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함(제3항)	의무규정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노동관계 업무 또는 분쟁조정활동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노동관계 업무 또는 분쟁조정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의무규정
		5.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 또는 분쟁조정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항에 따라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익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제4항)	의무규정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공익위원 중 3명 이내의 공익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분쟁조정위원회는 노무제공과 관련된 분쟁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으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음(제6항)	
		1. 노무제공에 따른 대가 지급에 관한 분쟁	
		2. 노무제공계약 내용의 변경·추가,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분쟁	
		3. 노무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려는 경우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분쟁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함(제7항)	재량·의무규정
		조정조서에는 분쟁 당사자와 조정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함(제8항)	의무규정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조서는 「민법」 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제9항)	의무규정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제6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다만,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제10항)	의무·재량규정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함(제11항)	의무규정
12	안 제15조(분쟁 조정 지원)	국가는 노동약자의 노무제공과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상담, 협의, 조정 등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는 노동약자에 대한 분쟁조정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자는 분쟁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됨(제3항)	의무규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제3항에 따른 비밀준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13	안 제16조(경력 관리)	국가는 노동약자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음(제1항) 1. 노동약자의 근무처, 경력, 자격 등에 관한 기록 접수 및 증명서 발급 2. 노동약자의 경력정보를 기록·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 3. 그 밖에 노동약자의 경력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약자의 경력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제2항)	
		국가는 노동약자에 대한 경력관리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의무규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관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4	안 제17조(공제회 설립 등)	노동약자 또는 사용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 중의 어느 하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음(제1항) 1. 노동약자인 구성원 간 상호부조 2.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지원	재량규정
		공제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하며, 공제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해서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제2항) 제1항에 따른 공제회(제1항제1호·제2호를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노동약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음(제3항) 1. 긴급한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소액 대부 2. 경제적 위험 등에 대비한 자산형성 지원 3. 복리후생 증진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4. 경력관리 지원, 직무능력 개발,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 5. 생애주기 노후준비를 위한 진단, 상담, 교육 6.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한 교육, 상담, 홍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의무규정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공제회 설립과 제3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공제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제3항에 따른 공제회는 노동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회의 인가 요건 및 절차, 공제사업의 운영 및 감독, 비용의 지원기준과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15	안 제18조(공제회 지원 특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 제2항, 제20조의5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노동약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기업·공제회 간 협력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에 따른 공제회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조성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6	안 제19조(노동 약자지원재단 설 립 등)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 동약자지원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을 설립함(제1항)	의무규정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제2항) 1. 노동약자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2. 노동약자의 복지 증진 및 생활 안정 지원 3.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및 교육 프로그 램 운영 4. 노동약자의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상담·협의·조정 등 지원 5. 노동약자의 이해 대변 및 소통 활성화 6. 노동약자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제3항)	
		재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제4항)	재량규정
		재단은 노동약자를 지원하는 다른 기관과의 연계 또는 위탁 을 통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제5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음(제6항)	
		국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 조할 수 있음(제7항)	재량규정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 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재단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 있음(제8항)	
		제2항제6호에 따른 노동약자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 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함(제9항)	
17	안 제21조(권한 의 위임·위탁)	그 밖에 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함(제10항)	의무규정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기본원칙)	—	• 미대상 — 노동약자 지원 및 보호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국가의 기본 원칙에 대해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2	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 미대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3	안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	• 비용추계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4	안 제7조(실태조사)	○	• 비용추계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5	안 제8조(노동약자지원위원회)	○	• 비용추계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노동약자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6	안 제9조(취업촉진 및 고용안정)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노동약자의 취업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약자의 창업 촉진, 사업화, 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추진할 사업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나,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검토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
7	안 제10조(복지증진)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가가 노동약자의 휴게시설·쉼터 설치 및 복지 물품 지원 등 노동약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임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시행할 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나,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8	안 제11조(권익 보호)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가가 노동약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 및 교육 지원 등 국가가 노동약자의 일하는 여건 개선 및 이해 대변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 - 그러나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시행할 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나,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검토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
9	안 제12조(표준 계약서의 제정·보급 등)	○	• 비용추계(제1항)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표준근로계약서 개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 미대상(제2항) -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노동약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현행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미첨부(제3항 및 제4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가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노무제공계약 당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표준계약서의 활용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상담·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그러나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시행할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 및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되나,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
10	안 제13조(보수 미지급 예방)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가가 제3자에게 노무제공에 따른 보수를 예치하는 시스템 도입·운영 등 보수 미지급을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 - 그러나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시행할 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나,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검토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1	안 제14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	• 미대상 – 제정안은 분쟁조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임이자위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65)을 통하여 검토하므로 중복 처리하지 않음 – 제정안은 임이자위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1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함
12	안 제15조(분쟁조정 지원)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노동약자의 노무제공과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상담, 협의, 조정 등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분쟁조정지원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비용 지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임 –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가 분쟁조정 지원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분쟁조정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추진할 사업의 규모, 지원의 범위 및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되나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
13	안 제16조(경력관리)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노동약자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노동약자의 근무처, 경력, 자격 등에 관한 기록 접수 및 증명서 발급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경력관리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임 –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가 경력관리 지원업무를 하거나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경력 관리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추진할 사업의 규모, 지원의 범위 및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되나, 현시점에서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없어 비용추계 곤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4	안 제17조(공제회 설립 등)	—	• 미대상(제1항~제3항, 제5항~제6항) – 제정안은 노동약자 또는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제회의 설립을 인가하는 업무는 현행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 미첨부(제4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공제회 설립과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공제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지원 규모에 따라 결정되나, 현시점에서 세부 내용을 검토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
15	안 제18조(공제회 지원 특례)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하여금 노동약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기업·공제회 간 협력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제정안 제17조(공제회 설립 등)에 규정된 공제회 지원 사업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제회 설립 등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제정안은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세부 내용을 검토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6	안 제19조(노동 약자지원재단 설 립 등)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약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추진할 위탁 규모와 이로 인한 수수료 및 보조금 등의 지원 규모에 따라 결정되나,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검토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
17	안 제21조(권한 의 위임·위탁)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업무 위탁 대가는 위탁하는 업무의 성격, 범위, 내용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현재 해당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현시점에서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계에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 제정안은 임의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1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지원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노동약자의 지원과 보호를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제정안에 규정된 지원계획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곤란
 - 본 추계서는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비용은 2024년 기준 고용노동부 정책연구비¹⁾의 평균값(4,150만원)을 준용하여 산출
 - 이때, 정책연구비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4]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지원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42	42	42	42	42	208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실태조사(안 제7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노동약자의 현황, 일하는 환경 및 처우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규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유사사례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작성하며,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유사사례 1) 2025년 출판 외주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용역예산) 6,000만원(2025년)

1)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학술연구 포함) 관련 비용

- (주요내용) 출판 업계에 종사하는 외주노동자의 근로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주한 연구용역
- (발주기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유사사례 2) 노무제공자 근로 실태조사
 - (용역예산) 7,360만원(2024년)
 - (주요내용) 노무제공자의 근로실태를 살펴보고, 노무제공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에 대한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의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용역
 - (발주기관) 국민연금공단

[표 5]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실태조사(안 제7조)	67	67	67	67	67	334

자료: 나라장터, 2025년 4월 8일 접속

다. 노동약자지원위원회(안 제8조)

- 제정안은 노동약자의 지정 및 노동약자의 지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노동약자지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약자지원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라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제정안은 노동약자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곤란
 - 다만, 본 추계서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사례를 토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민간위원 수) 7명(위원 11명,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4명)
 - (회의개최 횟수) 회의개최 횟수는 분기별로 1회씩 연간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회의참석 사례금) 회의참석 사례금(안전 검토비 등 포함)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²⁾

2)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p.218)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6] 노동약자지원위원회 구성·운영 비용추계: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7	7	7	7	7	—
회의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회의참석사례금(C, 만원/명·회)	30	30	30	30	30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8	8	8	8	8	42

주: 1. 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라.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등(안 제12조제1항)

□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가 노동약자가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표준근로계약서의 개발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제정안의 시행 첫해인 2026년에 수반되는 것으로 산출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례를 바탕으로 추계

- 표준계약서 관련 연구용역 평균금액 6,600만원/회

[표 7] 표준계약서 제·개정 관련 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행기관	연도	금액
2024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마련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24	66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마련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23	66
2022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공정거래위원회	2022	66
2021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공정거래위원회	2021	66
평균			66

자료: 나라장터, 2025년 4월 8일 접속

□ 제정안에 따라 노동약자의 지원과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동약자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정·보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8,300만원, 2030년 1억 8,3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9억 1,400만원(연평균 1억 8,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지원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42	42	42	42	42	208	42
실태조사(안 제7조)	67	67	67	67	67	334	67
노동약자지원위원회(안 제8조)	8	8	8	8	8	42	8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등 (안 제12조)	66	66	66	66	66	330	66
추가재정소요	183	183	183	183	183	914	183

주: 1.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 결과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